

충청북도의회기와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1999-04-30 규칙 제 11호
(일부개정) 2009-06-26 의회규칙 제 23호
(일부개정) 2015-06-26 의회규칙 제 35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원배지의 모형, 제작,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의회기의 규격과 모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6.26., 2015.6.26.>

1. 기면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율로 하되 표준규격은 가로 210cm, 세로 140cm로 한다.
2. 기면의 중앙에는 무궁화를 무궁화 속의 원내에는 “의회“자로 표시하고 무궁화 하단에 “충청북도의회“라고 예서체로 표시한다.
3. 무궁화 모형의 직경은 깃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하되 색채는 무궁화 동형과 “의회“자는 금색으로 한다.
4. 깃봉은 국기봉을 겸용한다.
5.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제3조(게양) ① 도의회기는 의회청사와 의장실에 게양한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에는 “후렌지“를 부착한다. <개정 2009.6.26.>

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도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제4조(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제6조(배지제식) ① 도의회의원 배지 규격과 모형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개정 2009.6.26.>

② 삭제 <1998.12.31.>

제7조(배지교부) ① 의원배지는 의원 등록 시에 교부한다. <개정 2009.6.26.>

② 의원배지는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신고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 <개정 2009.6.26.>

③ 전항에 따라 재교부 받을 경우 그 제작비용은 의원 본인이 부담한다.
<개정 2009.6.26.>

제8조(배지패용요령) 의원배지는 상의좌측 옷깃에 착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이전에 교부한 배지는 이 규칙에 따라 교부한 것으로 한다.

부 칙(1992. 6. 10 의회규칙 제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12. 31 의회규칙 제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4. 30 의회규칙 제1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6.26 의회규칙 제2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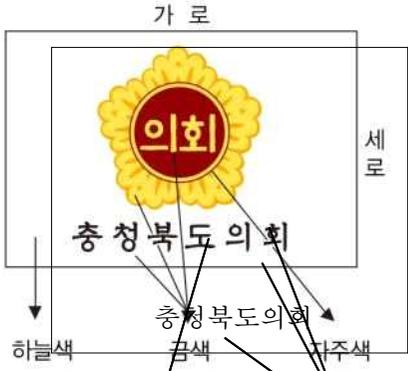
부 칙(2015.6.26 의회규칙 제35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이전에 교부한 배지는 이 규칙에 따라 교부한 것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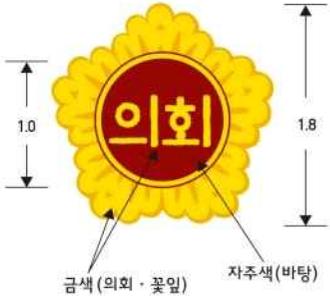
[별표 1]<개정 2015. 6. 26>

의회기 모형도와 규격

모 형 도	규 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세로=3:2 ○ 무궁화 도형의 직경 : 세로의 3/5 ○ 무궁화 도형의 가운데 원의 직경: 무궁화 도형 직경의 1/1.8 ○ “의회”자의 크기 : 원 직경의 0.8/1 ○ “충청북도의회”각 자의 크기 : 세로의 1/2 ○ “충청북도의회”자 전체의 폭 : 가로의 1/2

[별표 2]<개정 2015. 6. 26>

의원배지 모형도와 규격

모 형 도	규 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궁화 모형의 직경 : 1.8cm ○ 무궁화 모형의 가운데 원의 외경 : 1.0cm ○ 무궁화 도형의 가운데 원의 내경: 0.8cm ○ “의회”자의 직경 : 0.6cm